

신청인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해 방송, 기사삭제 및 취재 경위 해명으로 조정성립

A 방송사는 대기업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신청인이 해당 대기업 제품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모습을 방송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방송해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고, 다른 사안에 대한 답변을 임의 편집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해당 대기업과의 계약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A 방송사**는 촬영 및 공표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지는 못했지만, 해당 방송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모자이크 및 음성 변조를 통해 신청인의 신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주장했다.

중재부는 신청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대기업이 신청인을 알아봄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고, 피신청인 역시 이에 공감하여 신청인을 배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이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신청인에 관한 장면을 삭제하고, 취재 경위에 대한 해명자료를 작성해 해당 대기업에 전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일방의 주장만을 전달한 보도, 정정보도 게재 및 손해배상금 지급 등으로 직권조정결정

B 신문사는 신청인 회사가 무단으로 유명 기업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부적절한 실적을 쌓았으며, 부적절한 주식 상장 절차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악의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신청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B 신문사는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하였으며, 신청인의 입장을 들을 수 없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신청인의 반론을 수용할 여지가 있으며 전체 보도 중 일부 인용이 잘못된 점에 한하여 기사를 수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일방의 주장만을 상당한 기간 동안 수시 회에 걸쳐 보도했으며 주식 장상이 적법절차에 의해 완료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중재부는 양 당사자의 입장 차이가 커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정보도 게재와 함께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하여 해당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REVIEW

7월호 100자평

권혜은 님

[인터뷰] 저도 방송에 출연한 경험이 있는데, 방송이 나간 이후 예쁘지 않다는 외모 지적인 물론이고 각종 추측성 댓글이 달려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무차별적이고 원색적인 비난도 허용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악플로 상처받지 않을 권리도 중요하다'는 민별철 이사장님의 말에 공감이 됩니다.

유은경 님

[미디어트렌드] 언론이 권력 감시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대중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팩트체크 과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서 뉴스의 파급속도와 영향력을 고려해보면 팩트에 근거한 정확한 보도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초아 님

[여행수첩] 평소 브라질은 치안이 안 좋아 여행 기피 국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브라질에 대한 편견도 사라지고 브라질의 새로운 매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환경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库里치바 도시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브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결 친숙해진 느낌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공감블로그(<http://pacblog.kr>) 『**심견문** 사람』 8월호 발간 이벤트 페이지에서 소감이나 의견을 8월 19일(금)까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감되는 100자평을 남겨주시는 분 중 3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기프트콘(2만원 상당)을 드립니다.